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9.30.~2021.1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학생 정원의 모집유보에 관한 특례) 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생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 중 일부의 모집을 유보(이하 “모집유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규모,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학과신설 특례)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또는 제30

조제7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과,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과, 전공, 신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를 “장은”으로 한다.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 ----- ----- ----- ----- ----- ----- ----- -----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1.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단서 신설>	다. ----- ----- ---- <u>이내.</u> <u>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u>

2.·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학생 정원의 모집유보에 관한 특례) 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생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 중 일부의 모집을 유보(이하 “모집유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규모,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학과신설 특례)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또는 제30조제7항제1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
 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허가하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
 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학
 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과,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과, 전
 공, 신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한 입학정
 원의 범위에서 입학할 허가하
 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
 칙으로 정하는 대학원 학위과정
 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할
 허가할 수 있다.

⑦ ----- 장은 --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생략)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21